2025년도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

경상북도와 (재)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미래항공교통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,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"2025년도 미래항공교통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"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에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02월 17일 (재)경북테크노파크원장

□. 지원내용

- 1. 지원분야 : 미래항공교통*관련 기체, 부품, 운항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 등
 - * 미래항공교통분야 : 무인항공기, 드론, 항공관제, 항공교통서비스 플랫폼, 관련 SW 등 제조 및 운항, 부품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분야

구분	프로그램	세부내용	지원 규모	지원 금액
기술 개발 및 사업화 (R&D)	▶ 기술(제품) 개발	• 기술(제품)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 또는 사업 화를 위한 연구개발	2	60,000 첀애
상용화 (비R&D)	▶ 기 개발품의 상용화▶ 제품고급화	 기존에 개발된 제품(기술)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한 실증, 인증 등 개발된 제품(기술)이 TRL7 이상(별첨참고) 기존 제품의 경량화, 기능향상을 위한 디자의 기존 제품의 경량화, 기능향상을 위한 디자의 기관 기업 기준 기업 기업	2	100,000 원애
	▶ 특허출엔등록, 시전조사▶ 시험・인증・평가	인 개선 등 • 개발 기술(제품)의 지적재산권 확보 등 • 개발 기술(제품)의 신뢰성 확보 등		
마케팅	▶ R&D, 비R&D 선정기업 대상 선진기술 벤치마킹, 국내외 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참가/바이어 상담 기회 제공			

- * R&D. 비R&D 중복지원 불가
- ※ 이전 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은 동일과제, 동일프로그램 신청이 불가능하며,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(ex) 2024년 R&D지원기업 → R&D지원 불가, 비R&D지원 가능)
- ※ 사업비는 인건비, 간접비, 연구수당 계상불가, 재료비, 연구활동비에 한정하여 사업비 책정
- ※ 지원금은 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선지급하고 추후 사업종료 후 정산
- * 마케팅 지원은 R&D, 비R&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안내
- ※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2. 기업부담금 : 기업지원금의 10% 이상(현금 매칭)
- 3. 사업비환수 : 지원목적 외 사용, 지원기업 선정 시 조건 및 사업계획 불 이행의 경우 사업비 환수
- 4. 사업수행기간 : 2025. 04. ~ 2025. 10.(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5. 지원방향
 - 1) 미래항공교통 기체소재 및 내부 부품의 고기능, 경량소재 제작 기술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
 - 2) 미래항공교통 운항 관련 소프트웨어(관제, 운항, 교통관리, 비행제어 시스템, 자율비행 및 충돌회피 기술 등) 개발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기술 역량강화 지원

6. 지원절차

사업공고 (2025년 2월)	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(www.gbtp.or.kr)
과제 신청.접수 (2월 ~ 3월)	기업 → 경북테크노파크
서면/발표평가 (3월)	평가위원회 구성 (필요시 현장조사) ※1차 서면평가, 2차 발표평가
사업협약체결 (4월)	경북테크노파크 ↔ 중소기업
사업수행.관리 및 현장실태조사 (6월, 9월(2회))	중소기업 / 경상북도, 경북테크노파크
최종평가 (11월)	최종 평가위원회 구성
사업비 정산 (2026. 1~2월)	위탁정산기관(회계법인) 정산
성과활용 및 사후관리	종료 후 성과보고회(정산 후 1개월 이내) 종료 후 3년 사후관리

**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Ⅱ. 지원자격

- 1. 공고일 기준 **본사 또는 공장(연구소 포함)**이 경북도 내 소재한 미래항공 교통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희망 중소기업
 - ※ 경북 지역 외 소재기업의 경우,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내 경북도내 기업 이전 필요 (본사, 공장, 연구소) → 지원신청 시 기업 이전 확약서 제출 및 최종 결과 평가 시 기업이전 확인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 제출 必
- 2.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3. 2025년 10월까지 지원사업 완료 가능한 대상 지원
- 4. 지원 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 기재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자체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 결정
- 5. 본 공고 내용 외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에 의해 진행

Ⅲ. 지원제외 대상

- 1. 본사업 지원 적합성 관련
 - 가. 본 사업과 동일한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관련 사업에서 지원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이 확인될 경우
 - 나. 지원분야 및 지원자격이 상이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
 - 다. 접수 마감일 기준,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경우
 - 라. 접수 마감일 기준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
 - 마.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 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 - 바.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,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 하는 경우
 - 사.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. 재무 건정성 관련
 - 가.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1,000% 이상 시 제외
 - 나.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다.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 또는 부적정"인 경우
- ※ 자세한 사항은 Ⅵ.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고

Ⅳ. 평가방법 및 제출서류

- 1. (사전검토/서류확인)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과제의 중복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사전검토, 사전지원 제외대상 항목 해당 시 평가에서 제외함
- 2. (발표평가)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기업의 역량, 사업화 능력,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대효과 등에 대해 평가
 - 평가 항목 (발표평가)
 - i) 기술개발 및 사업화(R&D)

※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평가항목		평가내용	평가지표	배	점	
사업 추진 체계	추진조직 및 운영체계	◦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	∘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∘ 총괄책임자의 전문성			
		•연구조직의 적정성	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연구기기,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	20	30	
	연구능력	◦연구실적 등 연구역량	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	10		
기술성 및 사업성	기술성	∘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	◦ 전략적 육성 필요성 ◦개발기술의 차별성,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	20		
	사업성	◦ 시장전망	∘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가능성 ∘ 해당개발품목의 시장전망		30	
	파급효과	∘개발 성공시 파급효과	· 시장창출, 기술향상정도, 고용창출효과 등	10		
계획의 적정성	목표의 명확성	·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	·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·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	10		
	추진전략의 적정성			∘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∘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	10	30
			◦ 사전준비성	°기초데이터,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	10	
기여도	지역기여도	。주관기관의 지역 기여도	·지역 기여도(고용률 및 생산액 등) 및 기여가능성	10	10	
소 계				10	00	

ii) 상용화(비R&D)

※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	점	
사업 목표 및 필요성	목표의 타당성	· 사업화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	10		
	기술개발 정도	·기 개발된 제품의 기술개발 수준(TRL7단계 이상)	20	40	
	사업의 필요성	·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, 지원의 필요성	10		
	사업화 가능성	∘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전망	10	0	
계획의 적정성	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	· 추진계획 일정의 현실가능성 및 적정성	10	30	
	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· 신청 지원금의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	10		
활용계획 및 방안 수립	파급효과	∘지원 결과 활용 계획의 적정성	15	30	
	지역기여도	∘ 사업화 성공 시 기술, 경제, 사회적 기여가능성 ∘ 지역 기여도(고용률 및 매출액 등) 및 기여가능성	15	30	
소 계				00	

- 신청과제 평가 후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을 "지원가능과제"로 선정하며,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해당 과제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선정
-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-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
- 3. (평가위원 구성)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명 이내

- 4. (최종결과평가)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
 - ※ 평가등급: 성공, 보완, 실패, 최종평가 위원회 일정은 향후 공지
 - 가.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"인정" 또는 "환수"(전액 또는 일부)
 - 나. 최종 결과평가 항목

※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평가 항목	세부 항목	평가 지표	배점		
목표달성	목표달성율	사업수행 목표는 달성되었는가?	20	40	
및 성과	수행 성과	목표에 부합하며 수행 성과는 잘 도출되었는가?	20	40	
사업비 집행의 적정성	사업비 집행의 적정성	계획된 사업비는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?	30	30	
	활용계획	사업결과물 활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?	10		
활용 계획 및 방안 수립	부가가치 증대	부가가치 증대는 실현 가능하고, 기업 성장(시장규모, 점유율, 매출액 등)에 기여할 수 있는가?	10	30	
	파급효과 기술개발, 사업화 성공 시 기술,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		10		
합 계				00	

- 5. (평가위원회 재평가)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"평가보류"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 결과 통보 후 3주 이내 수행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- 6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 목록				
	① (서식1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			
	② (서식2) 신용상태조회 동의서				
	③ (서식3)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청렴서약서				
	④ (서식4)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				
필수	⑤ (서식5) 개인정보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서				
	⑥ 사업자등록증				
	① 최근 3년(22~24년) 재무제표 또는 스마트기업정보 플랫폼 (https://smart.gbtp.or.kr) 기업분석보고서 (※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)				
	⑧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				
해당시	⑨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				
	⑩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				
	①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				

∨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- 1. 신청양식 :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
- 2. 신청기간 : 2025. 2. 17.(월) ~ 2025. 3. 14.(금) 18:00까지
- 3.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재)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gbtp.or.kr) →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 - →신청서 작성 및 기타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
- 4. 문 의 처
 - 담당자 : 경북테크노파크 개방형혁신센터 송지연 선임연구원
 - E-mail 및 연락처 : valdere@gbtp.or.kr, 054-437-9313

VI. 참고시항 및 유의시항

1. 사전지원 제외 대상(공통운영요령 근거)

- 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(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)
- ③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 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⑤ <u>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</u> 연속 1,0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,0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 - 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 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
 - *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*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- * 상기의 신용등급이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 - 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 또는 부적정"
- ⑦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⑧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(신청서 등)가 미비하거나,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
- ⑨ 기타 본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유의사항

- ①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(**지원금액의 현금 10%이상**)이 있으며,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(이체내역 등) 제출必
-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④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⑤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※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기술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
- ⑥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
- ⑦ 사업비[사업비=지원금] 구성은 보조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·현물을 포함한 금액
 -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해야함(민간부담금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)
 - 경북TP-수혜기업 양자 협약으로 협약 체결
 -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
 -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급을 위해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
 -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%이상을 현금으로 계상,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
 -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. 단, 신규채용인력에 한해 인건비 계상 가능
 -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
 -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
 - 협약체결 → 민간부담금 입금(기업) → 사업비(보조금) 선지급(경북TP→기업)
 - 상용화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종료 후 직·간접 매출성과를 반드시 제출해야함
 - 자세한 사항은 선정 후 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
- ⑧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
- ⑨ [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]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
- ⑩ [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]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 관(기업)의 소유로 함
- ① [사후관리] 선정기업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기관에 보고해야함

[별첨] 산업핵심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

구분	단 계	정의	세부설명
기초 연구	1	기초 이론/실험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,	o 기초이론 정립 단계
단계	2	2 특허 등 개념 정립	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
실험 단계	3	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	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/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
	4	실험실 규모의 소재/부품/시스템 핵심성능 평가	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
시작품 단계	5	확정된 소재/부품/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	o 확정된 소재/부품/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∼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,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, 제조품질관리기준) 파일럿 설비를 구축
	6	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	o 파일롯 규모(복수 개 ~ 양산규모의 1/10 정도)의 시작품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, 생산용량, 수율, 불량률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 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(Good LaboratoryPractice, 동물실험규범)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
제품화 단계	7	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	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(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)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
	8	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	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,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
사업화	9	사업화	o 오선 기자체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, 의학급의 경우 적학정의 움속에가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-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

※출처 :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